

제 1364 호

1987. 6. 15.

신 간	공 보 관	승인	승인
접수일자	1987. 6. 15.	기재일자	1987. 6. 15.
처리과	길 일기	담당	담당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영 보
편집인 : 공 보 관 김 성
전화 : 731-6111~3
서울특별시 종합빌딩
전화 : 735-3337

현
순

보

차례

◎ 공문사항

- 소송수정유공공무원포장대상자추첨 3

◎ 규칙

- 제 2182 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증개정규칙 4

◎ 고시

- 제 419 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승인 8

◎ 구고시

- 서대문구제 22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8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 제 2 호 : 선박운항허가	9
◎ 공 고	
제 383 호 : 제 2 종전기공사업면허영업점지	9
◎ 구 공 고	
성북구제 23 호 : 특정 업사용기자재시 공업지정업체지정취소	10
강서구제 52 호 : 공인신조	10
◎ 사 령	

공 문 시 행

듯모아 하나로 힘모아 세계로

(관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법무 23209-911

(307)

1987. 6. 15.

수 신 : 수신처참조

제 목 : 소송수행유공공무원 표창대상자 추천(제 1회)

1. 서울특별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거 87년도제 1회 소송수행유공
작물 표창하고자 하니 기일임수 주천할 것.

가. 유공표창대상자

1)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받아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시 행정, 재정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공무원2) 제 1항 외의 소송담당자(별호사용 확인한 경우)로 지정된
아 자료수집 작성등 현저한 공로가 있어 우리시에 승소의 결과를 가져온
공무원 및 소송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소송담당공무원

나. 추천기일 : 1987. 6. 25 까지 (단, 기일 후 도착된 것은 제외함)

다. 제외대상 :

- 1) 공, 사생활을 통하여 흥미가 있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자
- 2) 추천일 기준 공무원 근속 3년, 사근속 2년미달자
- 3) 동일직급에서 2년이내 시장이상 표창 수상자
- 4) 정계체분을 받고 2년 미경과자
- 5) 현직급 임용, 현부서 근무 단기자
- 6) 인사위원회의 경고, 청탁경고처분을 받은후 1년 미경과자
- 7) 훈계, 경고처분후 6월 미경과자
- 8) 소송업무 담당 6월 미안자

우수창안이나 특출한 공적거양자는 근속기간등을 예외적으로
제용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

- 1) 공적조사 3부.
- 2) 공적요약서 3부.
- 3) 자체 공적입사 의결서 사본 2부. (자체 공적입사위원회 구
성부록에 한함).

서 울 특 별 시 장
기획관리실 관 전

수신처 : 제파 01-72, 서구 1-17, 서서 01-24, 서소 01-11, 서사 01-59, 서트 1-12.

보 1987.6.16

규 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6.15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④

◎ 서울특별시규칙제 2182 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중 다음과 같이
이 개정한다.

제 8 조의 제목 “(인사기록카드작성 및
변경)”을 “(인사기록카드작성)”
으로 하고, 동조제 2 항을 삭제한다.
제 1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 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 ① 공무원이 신규입용, 승진, 전직,
전보, 감임, 면직, 정계, 휴직, 직위
해제, 복직, 국내외 훈련, 국외출장,
겸임, 파견, 승급, 전출, 전입되었거
나 보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
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공무원
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호 중 제 1호 내지 제 3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교
판에 범표 1의 2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승진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주서로 기록하고, 제 4호 및 제 5호
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
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담당
사무

면에 담당업무의 전보제한, 기간 또
는 가점부서 근무기장을 기록하여
야 한다.

- 1. 법제 27 조제 4항 및 영제 28 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 및
및 견적이 금지된 자
- 2. 영제 27 조제 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가 금지된 자
- 3. 영제 34 조제 4 항 및 지방법구·
지도 및 의료직규정 제 1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직급이
상승권이 금지된 자
- 4. 제 51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보 제한의 적용을 받는 공무
원중 본청의 행정법규상 담당공무
지 구청의 기획감사과 감사과 및
조사제근무자 구청의 일방위과 병
사제근무자 및 동사무소의 행
사 담당공무원으로 지정된 자
- 5. 제 8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는 공무원중 본청의 행
정법규 상담실 및 구청의 기획
감사과 사회지도계 근무자
- ③ 공무원이 제 1 항 및 제 2 항의
인사기록을 변경(정점: 추가등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할 경우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중
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사장(인
사기록카드정본 관리책임자 참조)
에게 공무원인사기록 변경신청서(별지 제

3호사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사기록 변경기재 여부를 검토 결정한 후 인사기록카드 성본을 정리하고 인사기록카드 부본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 조의 2 (직위체적처분의 일소)

①시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경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경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 7년

나. 강등 : 5년

다. 견제 : 3년

2. 소정설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②시장은 직위체적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체적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4. 직위체적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체적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체적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 직위체적처분마다 2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정설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체적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 1 항제 2 호 또는 제 2 항제 2 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시 유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체적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직위체적처분 및 직위체적처분의 일소방법·전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6 조제 5 항중 "시울시립대학"을 "서울시립대학"로 "학장"을 "총장"으로 한다.

제 70 조제 3 항중 제 3 호를 삭제한다.

제 87 조제 1 항제 1 호중 "특수지 감지(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지, 나치)" 다음에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삽입하고, 동조동항제 2 호중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을 "울림퍼블리케이션"으로, "자동차판리사업소·판리부·등축과"를 "자동차판리사업소(직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각종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호 다음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신원증명서 1통	○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8	학교생활기록판지서류	○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19	신원진술서 3통(전직하였을 경우 4통) 및 별재사유가 기재된 호적등본 1통	○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13]의 제6항 중 “서울시립대학졸업자”를 “서울시립대학교졸업자”로 한다.

[별표 22] 행정자의 확인자(5.6급 일반직, 연구·지도 및 의료직) 중 3급이상 사업소장과 서립대학원 및 비교관의 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소	부제사업소		5.6급	부장	사업소장
	과제사업소	본소	5.6급	과장	사업소장
한강관리	4급기관장	5.6급	5.6급	하수처리장장	사업소장
	하수처리장	5.6급	5.6급	본소주무과장	사업소장
사업소	5급기관장	5.6급	5.6급	본소주무과장	사업소장
	하수처리장	5.6급	5.6급	하수처리장	사업소장
서울시립대학교	5.6급	5.6급	5.6급	사무국장	총장

1. 본청주관 국장이 확인자인 사업소소속 행정직 6급에 대하여는, 본청과 사업소장,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확인자인 한강관리사업소소속 전직급에 대하여는 본소와 하수처리장을 각각 구분하여 분포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별표 23] 행정자의 확인자(7급이하 및 기능직) 중 3급이상 사업소장을 다음과 같이 하고 비교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364 호 시 보 1987. 3. 15. 11-7

3 급 이 상 사 업 소	서울시립대학교		7급 이하 기능직	주무과장	사무국장
	종합건설본부		7급 이하 기능직	부 장	차 작
	공무원교육원		7급 이하 기능직	과 장	교수부장
	한 강 관 리 사 업 소	본 소	7급 이하 기능직	과외 주무과장	과 장
	4급 기관장 하수처리장		7급 이하 기능직	과 장	하수처리장장
	5급 기관장 하수처리장		7급 이하 기능직	하수처리장장	본소 주무과장
	기타 사업소		7급 이하 기능직	부장, 회장, 담당관	사업소장

2. 본청주관 과장이 확인자인 사업소
소속 직원과 한강관리사업소 본소
주무과장이 확인자인 5급 기관장
하수처리장 소속직원에 대하여는
본청과 사업소 및 본소와 하수처
리장을 각각 구분하여 통보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 ②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기준)
시장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징계
등 처분기록을 제10조의 2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월 1일을 기
준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③ (근무경력 가점경정에 관한 경
과조치) 제87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경정에 관
한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25일 부
터, 제8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윤립학문비단(윤립학문비단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
한 가점경정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4월 22일부터 적용된다.

④ (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조
정하여야 하며 그 명부는 이규
칙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별표 1의 2)

○○규정(별령의 정침) 제○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일부터 ○○○○년○월○일까지
승진(전보, 전직)이 금지된 자임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1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시고시제 370호('87.5.29)로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조서

(단위: m)

구분	등급	류별	폭면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10	320	금호1가동 603	금호1가동 603	금호1가동 272-1	
변경 *	3	6	320	*	*	*	일부구간 폭원축소

나. 결정도면: 별첨(생략)

구 고 시

◎서대문구고시제 22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대문구 공고 제 123호(87.5.14)
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공람공
고한 서울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도
시계획법 제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와 서울특별시 조례 제 2126호
(86.12.18)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
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 도시정책
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내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동
법시행령 제 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책과
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
다.

1987. 6. 1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조서

보인다.

1987. 6. 15

서대문구청장

※ 허가 내용

- 가. 사업시행자: 서대문구연희동55-1 일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
(학교)시행, 서울외국인학교 교사증축
다. 사업의 규모
 - 사업시행면적: 54,803 m²
 - 건물면적: 기존 19,760.24 m²
증희 2,756.8 m² 계 22,517.04 m²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지상 2층
라. 사업시행자: 서대문구연희동 55
재단법인 서울외국인학교 유기재단
대표이사 고 일선

제 1364 호 시

보 1987. 6. 15 11-9

- 마. 사업의 차수예정일 : 87. 6.
 바. 사업의 준공예정일 : 88. 12. 30
 사. 수용할토지 : 없음.
 아. 허가도서 : 면허(생략)

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2호

선박 운항 허가

1987년 6월
한강관리사업소장

○ 선박운항 허가내용

점용수 허가자	점 용 위 치	점 용 목 적	점 용 내 역
(주) 범한여행 장명진	강동구 암사 2동 614번지 앞 하천	요트 영업을 위한 선박 운항	· MJ-7 : 3척 · MJ-13 : 2척 · MJ-16 : 5척 · MJ-18 : 5척 · MJ-19 : 5척

○ 허가기간 : 87. 6. 11-87. 11. 30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383 호

제 2종 전기공사업 면허영업정지

1987. 6. 15.

서울특별시장

아 래

면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처 분 내 용	비 고
제 554 호	영진건설	김언수	신사동 19-100	영업정지 2월 (87. 6. 15 ~ 87. 8. 14)	전기공사업 제 7조 위반 (기술자 미책임)

11-10 제 1364 호 시

보 1987. 6. 15.

구 공 고

◎ 성북구 공고 제 23 호

특정업종 사용 기자체 서명업자 정부
지정 취소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 30 조의 규정

에 의거 아래 특정업종 사용기자체 시
공업 지정업체에 대하여 지정 취소
하였기 등법 제 28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1987. 6. 15.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지정 번호	업 소 명	소 세 지	대표자	사 용	조치사항
성북 69호	부성설비	장위동 231-44	민병경	무단장소이전	취 소
성북 152호	협양설비공사	석관동 394-26	김경식	무단장소이전	취 소

◎ 강서구 공고 제 52 호

공인신조

서울특별시 개인규칙 제 2 조 제 2 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정제
2 동 민원분야의 민원사무용 직인 및

제 인을 신조하였기 등 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

1. 사용개시일 : 1987. 7. 1. 09:00

2. 관할명 : 신정제 2 동 일원 사무전용
직인 및 제인 (분소용)

1987. 6. 15.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인명		
공인명	신정제 2 동 민원전용 직인	신정제 2 동 민원사무전용 제인 (분소용)

제 1364 호 시

보 1987.6.15 11-11

사 회			
◎ 1987.6.15 일자	형 제 184 호	◎ 1987.6.16 일자	형 제 187 호
천부남원군 신동면사무소 지방행정청주사 서울특별시전남을 경합. 서울행정경주사보에 강입함. 강남구 근무를 명함.	김 경 철	분야구 지방건축기원 분야구 근무를 명함	이 흥재
◎ 1987.6.16 일자	형 제 186 호	◎ 1987.6.23 일자	형 제 188 호
중 구 지방보건기사 중구 보건소 근무를 경합	김 수 열	충청북도 음성군 지방건축기사로 서울특별시 전임을 경합. 강남구 근무를 명함.	정 간 대
		◎ 1987.6.15 일자	형 제 189 호
		연 일	김 동준
		서울특별기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에 일함.	